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5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15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14.(월)	담당부서	지역경제진흥과
담당과장	김재은 과장(044-203-4420)	담 당 자	안준호 사무관(044-203-4422) 이한솔 주무관(044-203-4456)

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」이 2.18(금)부터 시행된다.

- 「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」, 2.15(화) 국무회의 의결 -

- 지역 산업위기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 -

□ 「**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**」(이하 "지역 산업위기대응법")이 **오는 2월 18일**(금)부터 **시행**된다.

○ 이 법은 기존 「**국가균형발전 특별법**」의 **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확대·개편**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,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외에, 산업위기 예방조치,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,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 등 **위기 단계별 대응수단**과

- 자금·세제, 산업 기반시설, 연구개발, 기업 컨설팅, 국유재산·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면 등 **지원 수단을 규정**하고 있다.

○ 한편,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**중·대형 조선사 구조조정**과 **GM 군산 공장 폐쇄** 등 지역 내 주된 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자 지난 '18년부터 **군산, 거제 등 6개 지역**을 지정하였으며,

*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현황 : ① 군산('18.4~'22.4), ② 울산 동구, ③ 거제, ④ 창원 진해구, ⑤ 통영·고성, ⑥ 목포·영암·해남(이상, '18.5~'23.5)

- 경영·고용안정, 위기산업의 경쟁력 확보, 대체산업 육성, 지역 인프라 구축 등 분야에 걸쳐 **지역산업과 경제 회복을 지원**해 오고 있다.

□ **작년 8월 17일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이 국회를 통과**한 이후,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, 이하 "산업부")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였으며,

○ 동 시행령은 **입법예고**('21.11.17~12.27), **법제처 심사**(~'22.2.8.) 등 절차를 거쳐 **2월 15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.

□ 이번에 제정된 **시행령의 주요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산업위기 단계별 체계적 지원

○ **(위기 전 : 산업위기 예방조치) 시·도지사**는 산업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**산업위기 예방계획**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,

- **정부**는 연구개발, 기반조성, 인력양성, 사업화 지원 등 분야에 걸쳐 **예방계획의 이행을 지원**할 수 있다.

○ **(위기 초기 :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) 정부**는 ① 지역의 주된 산업 내 **사업체 수 또는 종사자 수 등이 크게 감소**한 경우,

- 또는, ② **대규모 질병, 국제정세 변동**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위축된 경우,

- 또는, ③ **지역 핵심 기업의 구조조정** 등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**시·도지사의 신청**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(지정기간 **2년**)

-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는 **금융·고용안정, 연구개발, 사업화, 판로, 컨설팅 산업기반 구축** 등 분야에 걸쳐 **위기산업의 회복**을 지원한다.

○ **(위기 중 :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) 정부**는 ① 지역의 주된 산업에서 발생한 **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**되는 경우,

- 또는, ② **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지속**되는 경우,

- 또는, ③ **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**된 경우에 **시·도지사의 신청**을 받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(지정기간 **최대 5년**)

-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**위기산업의 회복에 더하여** 위기산업을 **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**하고 **소상공인** 보호 및 **상권** 활성화, **지역 인프라** 구축 등 **지역경제 회복**을 지원한다.

○ **(위기 이후 : 지역경제 연착륙 지원) 정부**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**지정기간이 만료된 이후**에도 지역산업 회복이 미진한 경우 **산업위기 예방조치의 지원수단을 활용**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 마련

○ **(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)** 지역에서 발생하는 **위기요인을 적시에 파악**하기 위해 산업연구원에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**지역별 경제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·분석할 예정**이다.

- 또한, 매년 지역 **산업구조, 경영환경, 고용 동향, 휴·폐업 현황** 등을 **실태조사**하여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한다.

○ **(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)** 지역산업과 경제의 **위기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심의**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(위원장 : 산업부 장관)를 운영한다.

□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시행에 따라 지역 주도 **산업위기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**하고, 산업침체가 발생할 경우 지역의 건의를 받아 **정부가 신속하게 지원**할 수 있게 되어 **지역경제 안정화**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안준호 사무관(☎ 044-203-44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